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이용대상 :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을 가진 자

정 원 : 주간보호 총36명

운영시간 : 월요일~토요일 08:00~18:00 (※ 기관운영상 변동될 수 있음)

계약기간 : 입소등록일로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

이용절차 : 상담(전화/내방/방문) -> 이용신청

구비서류 :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, 주민등록등본or 가족관계증명서 /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증명서1부(해당자에 한함)

지원서비스 : 송영차량지원, 주1회 목욕서비스

이용요금 :

1)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1,520,700	1,351,700	1,295,400	1,189,800	1,021,300	573,9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2)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 반	15%
기초 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화개년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~9%

4)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 (2021.01.01.)

구 분	장기요양 1등급	장기요양 2등급	장기요양 3등급	장기요양 4등급	장기요양 5등급	인지 지원등급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35,480	32,850	30,330	28,940	27,560	27,560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47,570	44,060	40,670	39,290	37,890	37,890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59,160	54,810	50,600	49,220	47,820	47,820
10시간 이상 ~ 12시간 미만	65,180	60,380	55,780	54,370	52,990	47,820
12시간 이상	69,890	64,750	59,810	58,430	57,040	47,820

식재료비:

이용일자	이용금액	비고
일	3,000 원	점심1회/간식2회(1식:2,000원,간식1회:500원) : 단,석식은 원하는 경우 제공
월	93,000 원	점심1회/간식2회(31일 기준) : 단,석식은 원하시는 경우 제공